
[재]전주문화재단 통신 인프라 증설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목 차

I. 구입 설명서	1
II. 일반 과업지시서	2
III. 특별 과업지시서	10
IV. 물품 규격서	13

1. 용역명

- (재)전주문화재단 통신 인프라 증설 구축 용역

2. 목적

- 본 사업은 사업소 통합에 따른 IP 전화기 및 부대장비를 증설 구축하는 용역 사업으로 써, 현재 운영중인 IP교환기 (IPECS-UCM)에 연동, 최신의 IP 전화기 및 부대장비를 구입·설치하여 (재)전주문화재단 전화서비스망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설치장소

- (재)전주문화재단 관리시설 내 지정 장소

4.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5. 작업수행 내용

- IP 전화기 및 부대장비 납품 및 설치
- IP 행정 전화기 및 부대장비(070인터넷 전화기) 교체 및 철거
- IP 행정 교환기(iPECS-UCM)에 신규 IP 행정 전화기 라이선스 및 운용 설정 등록·변경 수행
-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연동 설치
- 기존 사용 중인 전화번호 체계(E1 카드 연동) 수용

6. 하자보증 기간

- IP 전화기 및 부대장비 납품·설치일로부터 1년



7. 입찰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주시에 있어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 본 계약에 납품되는 IP 행정 전화기의 경우 (재)전주문화재단에서 현재 운용중인 IP 행정 교환기(iPECS-UCM) 및 부대장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품 제조사와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 투찰 전에 협약금액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숙지하고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II

일반 시방서

1. 적용범위

- IP 행정 전화기 구입·교체 과업지시서는 (재)전주문화재단 내 관리시설인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산실에 기 설치된 IP 행정 교환기 (iPECS-UCM)와 팔복예술공장, 한벽문화관 등 사무소의 IP 행정 전화기 및 부대장비를 연동 설치하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일체의 시스템 제작 및 설치조건을 명시하고 교체·설치 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향후 확장성, 안전성, 연동성 등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을 적용 한다.

2. 적용법규

- 특기사항 및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 본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교체·설치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법 시행령과 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 전자공업협회(EIA)의 표준규격
 - 국제 전기통신연합 권고사항(ITU-T)
 - IEEE(전기·전자·기술협회) 규격
 - 정보통신기술협회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인증(TTA) 기준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보안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및 운영 가이드라인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납품물품 및 자재의 승인

-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물품·자재는 형식승인용품 또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승인품이 없을 때는 동등이상의 신품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한다.
- 본 사업에 사용하는 주요 물품과 자재는 사전에 CATALOG, 견본품 및 제작도 등을 첨부한 물품·자재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아니한 물품·자재 또는 불합격된 물품·자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 승인된 물품·자재일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 납품되는 장비의 모든 매뉴얼은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 현장에 납품된 물품·자재는 시험성적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자료를 첨부하여 물품·자재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수를 마쳐야 한다.

4. 이행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반계약 관례에 따르며 계약자와 발주기관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납품 검수 방법은 납품, 설치 후 완공시험을 거쳐 정상 동작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확인 후 납품처리 한다.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공사일정을 제출하고 협의 후 착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기타 모든 재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진다.



- 물품 납품 및 설치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 하도록 국가가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훼손

- 본 사업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물품,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 계약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교체·설치 작업 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시스템과 관련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제반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킬 수 있으며 완료 즉시 제반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현장 출입자는 작업 현장을 출입하면서 취득한 보안 사항과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 제한 및 통제구역 출입, 물품 납품 및 설치 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한다.

7. 하자보증

- 하자보증기간은 완료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 계약자는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품질이나 성능 및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을 하여야 하며 하자발생시 지체 없이 기기의 무상 교체 및 수리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하자보증 기간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 결함사항이 발견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고장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완전하게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장비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자는 납품장비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서비스 요청 시 즉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9. 납품 및 관련사항

- 납품절차는 자재검사, 설치작업, 시험운용, 완료검사 순으로 하며 계약자는 교체·설치 장소에 납품 전 검수 요청하여 검수에 합격되면 납품·교체·설치를 작업하고 시험운용 완료 후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 모든 물품은 수송 및 승하차시 충격, 진동,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서 납품되어야 한다.
 - 모든 부품의 금속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도장 처리 되어야 한다.
 - 정전기에 민감한 소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정전차폐를 하여야 한다.
- 납품 전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시 공장검수 또는 공장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물품 납품시 자체 시험 및 공장검수 후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운반도중 충격에 의해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별도 납품하여야 한다.
- 공급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다시 공급하여야 한다.
- 시험·운용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책임 하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과 성능을 시험한다.
- 시험운용결과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사항을 계약자 부담으로 개선·시행하여야 한다.

10. 구성품 및 부품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 특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도 및 안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부품은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모든 부품은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다른 부품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특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 본 사업의 모든 시스템은 부문별로 정격 퓨즈를 장착하여 해당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콘넥터 등 탈착이 가능한 부분은 부착 시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향식별이 용이 하여야 한다.

10. 완료검사

- 완료검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종합검사하며, 검사결과 미비 사항은 보완 시까지 시험운용기간을 연장하고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연장기간 만큼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 완료검사일은 장비가 설치되고 시험운용 완료 후 정상가동 되어 인수가 종료된 시점으로 한다.
- 계약자는 완료검사일 이내에 납품 물품을 교체·설치, 시험운용



등을 종료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교 육

- 본 사업 관련 교육은 발주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이 가능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용 및 유지보수 등 필요한 모든 교육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시 상주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에 대한 충분한 이론과 실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조사 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운영자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및 교재 등은 전액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자는 장비 설치 완료 후 무상보증기간 내에는 장비의 O/S 및 UTILITY 등의 UP-GRADE로 인하여 추가 신규교육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관련자료 제출

- 계약자는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아래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출 자 료	제 출 기 간	부 수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계약 체결 시	1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계약 후 7일 이내	2
산출내역서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 서약서	계약 후 7일 이내	각 1
참여 기술자 명단	계약 후 7일 이내	2

- 계약자는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출 자 료	제 출 기 간	부 수
완료계, 보안확약서	완료 시	2
완료내역서 (제조사 발행용 IP License Key 인증서 포함)		
납품설치완료확인서		
사진첩(시공 전/후)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 IP 전화기 및 부대장비 교체·설치(이하“ 시스템”라 함) 등에 적용 한다.

2. 공통사항

- 본 규격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IEEE, ITU-T, KS 등의 권고안 및 규격에 따라야 한다.
- 기타 국내외 통신관련 제 규정, 규격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시스템의 설치는 H/W 및 S/W까지 포함하여 설치한다.
- 도입시스템의 제조사로부터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약속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 및 완벽한 호환성을 위해 IP 전화기 및 부대장비는 현재 전주문화재단 내 관리시설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운용중인 IP 행정교환기(iPECS-UCM)와 동일 제조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일반사항

- 설치장소의 IP 전화기 및 부대장비의 교체·설치는 발주기관의 추가 부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 IP 전화기에 대한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설치 장소에 납품 전 검수 요청하여 검수에 합격되면 납품을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 전국단일행정전화망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



터넷전화(IPT) 설치 시 고려사항 지침을 적용 하여야 한다.

4. 세부 기술적인 사항

○ IP 전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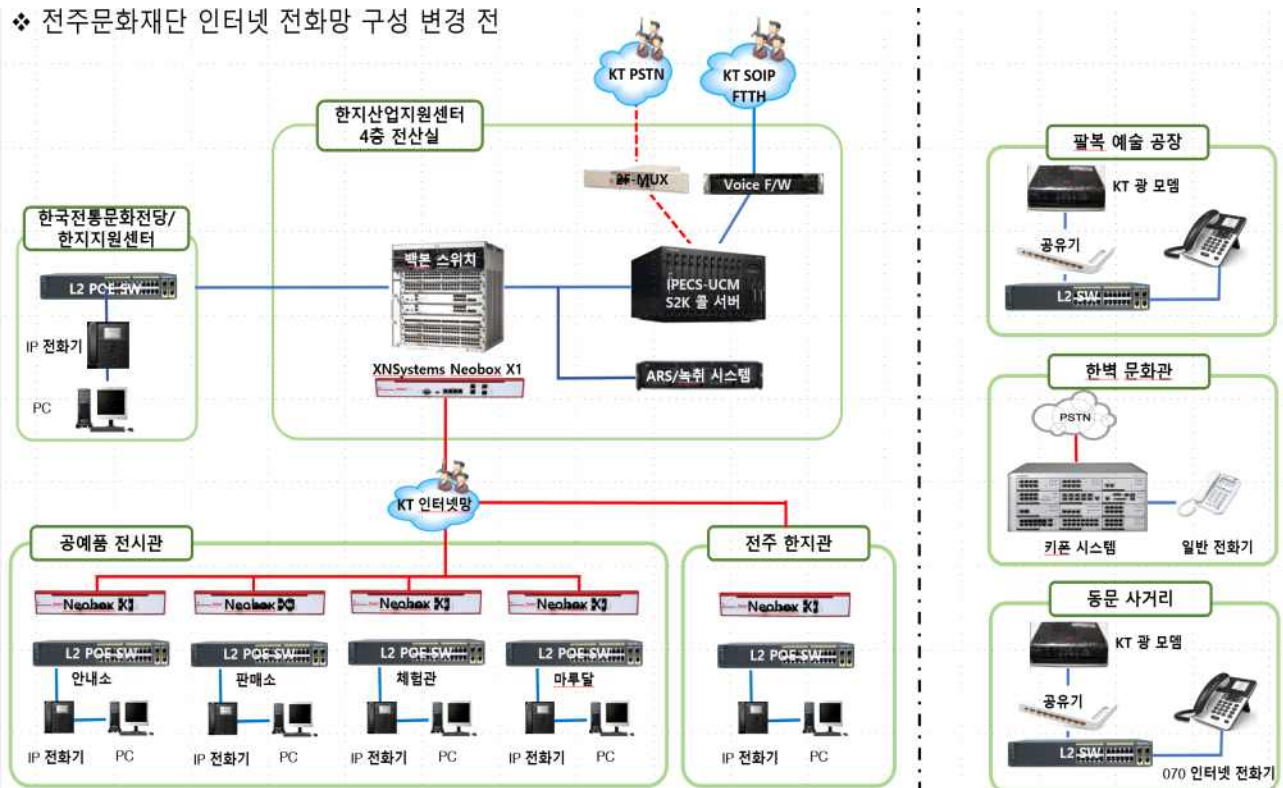
- IP 전화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메뉴 및 기능이 한글 및 영문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
- One Touch 재다이얼 및 착신전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양한 착신전환 기능(All/Busy/No Answer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간편한 회의 통화 및 호 전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헤드셋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단말기별 이름(한글/영문)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Back Light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착신 Ring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SIP 단말의 원활한 펌웨어 및 설정화일 업그레이드 관리와 인증서, 키 관리를 위한 자동 프로비저닝(Auto Provisioning)을 웹 기반 관리 Tool 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정 IP 방식과 유동 IP 방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목적 버튼의 Indicate LED는 2 color이상 확실히 구분되는 색을 제공하여야 한다.
- LAN 포트는 10/100/1000Mbps Ethernet 2개(PC/LAN)를 제공해야 한다.
- 단말기에서 LLDP-MED, 802.1X, VPN 기능을 지원해야한다.
- VoIP보안을 위해 시그널 및 미디어 암호화를 위해 TLS 및 sRTP 프로토콜, AES 및 ARIA 암호화알고리즘, RSA 및 ECC 키 교환 알고리즘을 지원해야 한다.
- TTA로 부터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Ver.4” 인증을 득한 제품 이어야 한다.
- 2.8인치 6라인 이상의 320 × 240 컬러 LCD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IP 전화기 자체에 BLA, BLF, Speed dial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6개의 LCD 라벨 타입의 버튼을 제공해야 한다.
- 다양한 UC 서비스를 위해서 XML을 지원하여야 한다.
- 광대역 코덱인 G.722 을 Bit rate 별(64/56/48)로 구분하여 제공해야 하고 불규칙하고, 비신뢰성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iLBC도 지원되어야 한다.



- 현재 전주문화재단 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운용하고 있는 IP 행정 교환기(iPECS-UCM)에 신규 IP 행정 전화기 라이선스 및 운용 설정값 등록·변경을 수행하여 IP 전화기에 대한 교체·설치 및 철거에 따른 행정 전화망 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구성도

❖ 전주문화재단 인터넷 전화망 구성 변경 전



IV **물품 규격서**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1	IP 전화기	대	60

- LCD : 2.8인치 6 lines 320 x 240 Color LCD
- Flexible Button : 6(3 스크롤 페이지), 총 18버튼 이상 제공
- Indicate LED : 3 color (Red, Green, Yellow)
- LED indicators : Speaker, Headset, Mute, Msg wait, DND
- XML Support (Text-plain)
- 10/100/1000Mbps 2 LAN Port
- Power : PoE(802.3af, Class 3) or AC adapter
- Codec : G.711, G.722, G.729AB, iLBC(TBD)
- Handsfree(Full Duplex), Handset, Headset
- Optional DSS: 48버튼 * 2개 연동 / 12 혹은 24 버튼 * 1개 연동
- QoS : Dynamic jitter buffering, 802.1p/Q VLAN, Layer 3 TOS, DiffServ
- IP address : Static, DHCP
- Provisioning : FTP, TFTP
- Network Protocol : TCP/IP, DHCP, IPv4/IPv6, STUN, TFTP, SNTP, RTP, RTCP, FTP, UDP, ARP, HTTP, HTTPs
- Security : TLS v1.0/v1.2 및 sRTP 프로토콜, AES 및 ARIA 암호화 알고리즘, RSA 및 ECC 키교환 알고리즘, 802.1X, VPN 등 지원
- Management : LLDP-MED (Auto QoS)
- Maintenance : PING테스트, 로그 저장, 패킷 캡처, 화면 캡처 기능 지원
- TTA로 부터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Ver.4” 인증을 득한 제품 이어야 한다

※ 원활한 장비운용과 호환성을 위해 행정교환기(iPECS-UCM)와 동일제조사의 제품으로 한다.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2	IP 전화기 확장 버튼(24 버튼)	개	60
<p>○ IP 전화기와 연동 가능한 모델이어야 함</p> <p>○ BLF 및 BLA 기능 제공</p> <p>○ 페이퍼 타입 24 단축버튼 제공</p> <p>○ 별도의 외부전원 불필요</p> <p>※ 원활한 장비운용과 호환성을 위해 행정교환기(iPECS-UCM)와 동일제조사의 제품으로 한다.</p>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3	미디어게이트웨이 I/O 모듈	식	1
<p>○ 디지털 국선 게이트웨이 모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1/T1, Pri, NO.7 등 회선 연동 - 통신랙 마운트용 1U 케비넷 제공 - 디지털 국선 게이트웨이 30CH X 1EA 제공 <p>○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모듈 (8Port d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Port 내선 가입자 제공 - CID(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 지원 - 통신랙 마운트용 1U 케비넷 제공 - 8Port 아날로그게이트웨 X 3EA 제공 <p>※ 원활한 장비운용과 호환성을 위해 행정교환기(iPECS-UCM)와 동일제조사의 제품으로 한다.</p>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4	라이선스	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전화기용 라이선스 60 Lic 제공 ○ 이기종 장비 연동용 라이선스 10 Lic 제공 ○ 아날로그 게이트웨이용 라이선스 3 Lic 제공 <p>※ 원활한 장비운용과 호환성을 위해 행정교환기(iPECS-UCM)와 동일제조사의 제품으로 한다.</p>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5	POE 스위치	EA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인치의 표준 Rack에 장착 및 고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24개의 10/100/1000 Base-T 포트와 4개의 업링크 1G/10G 겸용 광포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 안정적 스위칭을 위해 168Gbps 용량과 95.2Mpps 성능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 DRAM 512MB, Flash 512MB 이상 메모리를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과 포트의 동작 상태 감시를 위한 LED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표준 802.3af PoE, 802.3at PoE+를 모두 지원하고 모든 24개의 사용자 포트에 동시 15.4W 를 공급할 수 있도록 370W 이상의 PoE 전원 용량을 제공해야 한다. ○ Voice VLAN, LLDP-MED 기능을 지원해야한다 <p>※ 원활한 장비운용과 호환성을 위해 발주처에서 운영중인 장비와 동일제조사의 제품으로 한다</p>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6	POE 허브	EA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인치의 표준 Rack에 장착 및 고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8개의 10/100/1000 Base-T 포트와 2개의 업링크, 2개의 SFP 포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 표준 802.3af PoE, 802.3at PoE+를 모두 지원하고, 최대 130W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보안 서약서 (사업 참여자)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재)전주문화재단 통신 인프라 증설 구축」
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전주문화재단 통신 인프라 증설 구축」 용역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
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업무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재)전주문화재단 통신 인프라 증설 구축」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재)전주문화재단 귀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① 사업자는 (재)전주문화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재)전주문화재단에 납부한다.
-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재)전주문화재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항	처리 기준
보 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0%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의 20%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위규사건 발생일로부터 다음 용역비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전주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전주문화재단 귀하

